경남개발공사

창원현동 A-2BL [남양휴튼]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창원 현동 A-2BL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사전 예약제를 통한 실물 견본주택관람과 사이버 견본주택(www.현동남양휴튼.com)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사전예약 사이트 : 사이버 견본주택(웹사이트 : www.현동남양휴튼.com)
- 날짜 및 시간대별로 예약이 가능하나 특정일자 및 시간의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시간당 예약가능 건수가 제한됩니다.
- 사전 방문 예약자에 한해 견본주택 방문 관람이 가능하며, 본인과 동반 1인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현장접수, 우편접수 가능) 및 계약체결(현장계약) 시 현장 방문은 동별 지정일에만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 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
  (출입국사실 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관련 사항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현동지구 내 A-2BL)

▮공급대상 : 총 1,159세대 중 공공분양주택 350세대 (전용면적 60㎡이하)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견본주택 상담전화(055-223-8600)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15(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 신청,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자산보유, 재당첨 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693**이며, 이 공고문은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개관은 2021.09.15.(수) 오전 10시부터**이며, 팜플렛은 견본주택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

■ 본 단지는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혼합 단지이며, 총 1,159세대 중 350세대는 공공분양주택, 809세대는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이며,「주택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15)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창원시 고시 제2012-20호에 의거,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주택법」제75조 제2항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 단독세대 또는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일반공급에 한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2021.09.15)**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제출시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신청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필요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자산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고	접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
	특별공급 (기관추천 포함)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09.15(수)	09.27(월) (08:00~17:30) ※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 접수가능 (10:00~14:00)	09.28(화) (08:00~17:30) ※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은행창구 접수가능 (09:30~15:30)	09.29(수) (08:00~17:30)	10.06(수)	10.07(목)~10.10(일) (10:00~16:00)	11.08(월)~11.10(수) (10:00~16:0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및 모바일앱					창원현동 남양휴튼 견본주택	창원현동 남양휴튼 견본주택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견본주택 접수시간 : 10:00 ~ 14:00)

■ **인터넷 청약시** 먼저 거래은행을 통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특별공급, 일반공급) . 순위별(1,2순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정대상지역**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되어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전매제한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신청 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부적격 당첨)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며,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재당첨 조회 등의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Ⅰ 공급규모·대상 및 공급가격

1. 공급규모

■ 창원현동 A-2BL 공공분양주택 12~25층 12개동 전용면적 60㎡이하 350세대 (특별공급 298세대 포함)
- 공공분양동은 201동, 202동, 211동입니다.

2. 공급대상

주택유형	주택형	발코니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대지면적(㎡)	공급세대수								최고층수	최하층세대수	입주예정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계)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공공분양	합 계								350	36	104	87	18	17	36	52		16	
	59.8326A	확장	59.8326	22.9415	2.6335	43.7217	129.1293	55.7026	276	28	82	69	14	14	28	41	25	13	'24.02
	59.9093B	확장	59.9093	22.6906	2.6367	43.7777	129.0143	55.7740	49	5	15	12	3	2	5	7	25	2	
	59.8819C	확장	59.8819	23.2608	2.6355	43.7577	129.5359	55.7485	25	3	7	6	1	1	3	4	25	1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 중 59B(2세대)만 다락방이 설치되며, 59A, 59C형은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형별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잔금
				계약시	'21.12.10	'22.03.10	'22.07.10	'22.11.10	'23.03.10	'23.07.10	'23.11.10	입주시
59A	1층	기본형	195,373,000	10,000,000	9,537,300	19,537,300	19,537,300	19,537,300	19,537,300	19,537,300	19,537,300	58,611,900
		마이너스옵션	173,372,000	10,000,000	7,337,200	17,337,200	17,337,200	17,337,200	17,337,200	17,337,200	17,337,200	52,011,600
	2층	기본형	201,675,000	10,000,000	10,167,500	20,167,500	20,167,500	20,167,500	20,167,500	20,167,500	20,167,500	60,502,500
		마이너스옵션	179,674,000	10,000,000	7,967,400	17,967,400	17,967,400	17,967,400	17,967,400	17,967,400	17,967,400	53,902,200
	3층	기본형	205,877,000	10,000,000	10,587,700	20,587,700	20,587,700	20,587,700	20,587,700	20,587,700	20,587,700	61,763,100
		마이너스옵션	183,876,000	10,000,000	8,387,600	18,387,600	18,387,600	18,387,600	18,387,600	18,387,600	18,387,600	55,162,800
	4층	기본형	207,977,000	10,000,000	10,797,700	20,797,700	20,797,700	20,797,700	20,797,700	20,797,700	20,797,700	62,393,100
		마이너스옵션	185,976,000	10,000,000	8,597,600	18,597,600	18,597,600	18,597,600	18,597,600	18,597,600	18,597,600	55,792,800
	기준층	기본형	210,078,000	10,000,000	11,007,800	21,007,800	21,007,800	21,007,800	21,007,800	21,007,800	21,007,800	63,023,400
		마이너스옵션	188,077,000	10,000,000	8,807,700	18,807,700	18,807,700	18,807,700	18,807,700	18,807,700	18,807,700	56,423,100
59B	1층	기본형	194,962,000	10,000,000	9,496,200	19,496,200	19,496,200	19,496,200	19,496,200	19,496,200	19,496,200	58,488,600
		마이너스옵션	173,007,000	10,000,000	7,300,700	17,300,700	17,300,700	17,300,700	17,300,700	17,300,700	17,300,700	51,902,100
	2층	기본형	201,251,000	10,000,000	10,125,100	20,125,100	20,125,100	20,125,100	20,125,100	20,125,100	20,125,100	60,375,300
		마이너스옵션	179,296,000	10,000,000	7,929,600	17,929,600	17,929,600	17,929,600	17,929,600	17,929,600	17,929,600	53,788,800
	3층	기본형	205,443,000	10,000,000	10,544,300	20,544,300	20,544,300	20,544,300	20,544,300	20,544,300	20,544,300	61,632,900
		마이너스옵션	183,488,000	10,000,000	8,348,800	18,348,800	18,348,800	18,348,800	18,348,800	18,348,800	18,348,800	55,046,400
	4층	기본형	207,540,000	10,000,000	10,754,000	20,754,000	20,754,000	20,754,000	20,754,000	20,754,000	20,754,000	62,262,000
		마이너스옵션	185,585,000	10,000,000	8,558,500	18,558,500	18,558,500	18,558,500	18,558,500	18,558,500	18,558,500	55,675,500
	기준층	기본형	209,636,000	10,000,000	10,963,600	20,963,600	20,963,600	20,963,600	20,963,600	20,963,600	20,963,600	62,890,800
		마이너스옵션	187,681,000	10,000,000	8,768,100	18,768,100	18,768,100	18,768,100	18,768,100	18,768,100	18,768,100	56,304,300
	최상층 (2세대)	기본형	230,600,000	10,000,000	13,060,000	23,060,000	23,060,000	23,060,000	23,060,000	23,060,000	23,060,000	69,180,000
		마이너스옵션	208,645,000	10,000,000	10,864,500	20,864,500	20,864,500	20,864,500	20,864,500	20,864,500	20,864,500	62,593,500
59C	1층	기본형	196,243,000	10,000,000	9,624,300	19,624,300	19,624,300	19,624,300	19,624,300	19,624,300	19,624,300	58,872,900
		마이너스옵션	174,144,000	10,000,000	7,414,400	17,414,400	17,414,400	17,414,400	17,414,400	17,414,400	17,414,400	52,243,200
	2층	기본형	202,574,000	10,000,000	10,257,400	20,257,400	20,257,400	20,257,400	20,257,400	20,257,400	20,257,400	60,772,200
		마이너스옵션	180,475,000	10,000,000	8,047,500	18,047,500	18,047,500	18,047,500	18,047,500	18,047,500	18,047,500	54,142,500
	3층	기본형	206,793,000	10,000,000	10,679,300	20,679,300	20,679,300	20,679,300	20,679,300	20,679,300	20,679,300	62,037,900
		마이너스옵션	184,694,000	10,000,000	8,469,400	18,469,400	18,469,400	18,469,400	18,469,400	18,469,400	18,469,400	55,408,200
	4층	기본형	208,904,000	10,000,000	10,890,400	20,890,400	20,890,400	20,890,400	20,890,400	20,890,400	20,890,400	62,671,200
		마이너스옵션	186,805,000	10,000,000	8,680,500	18,680,500	18,680,500	18,680,500	18,680,500	18,680,500	18,680,500	56,041,500
	기준층	기본형	211,014,000	10,000,000	11,101,400	21,101,400	21,101,400	21,101,400	21,101,400	21,101,400	21,101,400	63,304,200
		마이너스옵션	188,915,000	10,000,000	8,891,500	18,891,500	18,891,500	18,891,500	18,891,500	18,891,500	18,891,500	56,674,5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동은 그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추후 중도금 대출 가능은행을 선정하여 별도 안내예정 입니다.

4. 발코니 확장 비용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며, 발코니 확장은 전세대 무상으로 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공간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 **현관 중문 : 전세대 무상 설치**
■ **공간선택(무상) 안내**
※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주택형	구 분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비 고
		기본형	공간확장형	
59A	1 주방확장	기본형 주방	와이드 주방 : 주방확장 + 스타일러장 + 외투장 ※ 스타일러 미제공	와이드주방시 팬트리 미제공 및 수납장 설치, 아일랜드 가구 위치 변경 주방가구 및 현관팬트리 크기 축소
	2 거실확장	2-1 거실/침실3 분리	거실 + 침실3 통합	2-1 과 2-2 중 하나만 선택가능
		2-2 침실2/침실3 분리	침실2 + 침실3 통합	
59B	3 거실확장	3-1 거실/침실3 분리	거실 + 침실3 통합(거실과 순환동선으로 연결된 공간)	3-1 과 3-2 중 하나만 선택가능
		3-2 침실2/침실3 분리	침실2 + 침실3 통합	
59C	4 팬트리 추가	침실2/침실3 분리	침실3 공간축소(팬트리+스타일러장+외투장)+침실2 공간 확장 ※ 스타일러 미제공	4 와 5 중 하나만 선택가능
	5 침실 확장	침실2/침실3 분리	침실2 + 침실3 통합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시 기본형이 설치됩니다.** [단위 : 원]

주택형	구 분	기본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유/무상	비고
				합계	계약금 10% (계약시)	잔금 90% (입주시)		
59A 59B 59C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만 설치 (거실+침실1)	거실+침실1	3,419,000	341,900	3,077,100	유상	
	하이브리드 쿡탑	가스쿡탑(3구)	가스(1구)+인덕션(2구)	823,000	82,300	740,700	유상	미선택시 기본형 제공

6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② 바닥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스피커, 무선AP
⑤ 욕실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액세서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부부욕실), 욕실배기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기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⑧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통신단자함(신발장후면)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자동빨래건조대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에어컨냉매배관(기본형 설치위치), 세대환기시스템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우리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 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6. 분양대금 납부 안내

■ 분양대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각 회차별 지정일자에, 잔금은 입주지정일(계약 후 별도 통지)까지 납부하되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일자(입주지정일) 전 선납하는 경우 공사 자체규정에 따라 선납할인(납부기한 15일 전에 선납하는 경우로서 선납일수만큼의 연2.5%의 이자)하여 드리며, 납부한 선납금액은 해약 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납할인 금액은 입주예정월 초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며,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재정산 하며,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 기간 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6.5%)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Ⅱ 신청기준(무주택, 소득, 자산)

무주택세대구성원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1.10.06)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6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5)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3">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215,500천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건 물</td><td>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r><td colspan="2">시설물</td><td>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r><td>자동차</td><td>34,960천원
이하</td><td colspan="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td></tr>
</table>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5)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생애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잔여공급(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384,376원) 추가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일반공급,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3>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등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5)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필요 없음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해당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예시
창원동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창원시(장애인, 철거민,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국방부국군복지단(10년 이상 복무군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대한체육회(우수선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 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1.9.27.(월)]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5)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2.9.16 ~ 2021.9.15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를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신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②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2002.9.16 ~ 2021.9.15 기간 중 출생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15.9.16 ~ 2021.9.15) 기간 중 출생자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지역(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5)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유주택자로 봄(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신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②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자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5.)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을 충족하는 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단위 : 원]

구 분	소 득 기 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생애최초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신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②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5)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2014.9.16 ~ 2021.9.15 기간 중 출생자))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1.까지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아래의 순위(1순위→2순위) ② 동일 순위내 경쟁시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신분 → 그 외 지역 거주자」에 의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합니다.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 목	기 준	비 고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주택건설지역(창원**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마.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824,128	5,675,364	5,675,364	5,914,918	6,222,418	6,529,919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5.)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일반공급 소득기준**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 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아래의 순위(1순위→2순위)** ② **동일 순위내 경쟁시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신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③ **<표4>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접수받고, **1순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 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2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구 분	해 당 사 항
무주택 기 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Ⅱ. 신청기준의「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Ⅳ 신청시 확인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금융/네이버/공동 인증→ 조회기준일 입력→ 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1.10.06)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만65세 이상인 분, 장애인,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아래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1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 :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 및 자격입증서류, 1층주택 우선배정신청서(공사양식) 제출 • 일반공급 신청자 : 청약시 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시 자격입증서류 및 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 추가 제출 ※ 자격입증서류 :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③번 해당자-가족관계 증명서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다른주택의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불가)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또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경남개발공사 분양관리팀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의 경우 'Ⅱ.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Ⅴ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공무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국가유공자, 대한체육유공자)	2021. 9. 27(월) (08:00 ~ 17:30)	**인터넷 청약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검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 견본주택 : 10:00 ~ 14:00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 1순위	2021. 9. 28(화) (08:00 ~ 17:30)	**인터넷 청약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검색
	• 2순위	2021. 9. 29(수) (08:00 ~ 17:30)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 Home(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 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30~15:3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현동 남양휴튼 견본주택 055-223-8600)**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Ⅵ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코로나19 확산 및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단,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취소나 정정시는 예외)

1.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청약홈"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증서는 은행 또는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증권용 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 청약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신청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신청취소후 재접수 하여야 함)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견본주택 10:00~14:00) :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아여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목록상의 필요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행창구 접수 불가)

※ 일반공급 방문접수(입주자저축 가입은행, 09:30~15:30) :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접수를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구비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견본주택 접수 불가)

구 분		구비사항
신청주체별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은행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5.) 현재 창원시에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창원시)", 창원시 외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한 경우"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Ⅶ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1.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2021. 10. 6(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2021.10.7(목) ~ 2021.10.10(일) 4일간, 10:00 ~ 16:00	2021.11.8(월) ~ 2021.11.10.(수) 3일간, 10:00 ~ 16:00
	- 서류제출 장소 : 견본주택(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 - 당첨자 계약체결 : 견본주택에서 현장 계약을 진행합니다.	

■ 인터넷 당첨자 확인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 터 넷	- 이용기간 : 2021.10. 6(수) ~ 2021. 10. 15(금), 10일간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스마트폰 앱 으로 확인 시 : 스마트폰 앱 청약홈 접속 → 당첨조회 →당첨조회(10일간)
문자(SMS)	청약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2021.10.6.(월) 08:00 제공 / 제공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분양관리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한 내[2021.10.7(목) ~ 10.10(일)]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으며,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포기(당첨자 관리)로 간주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9.15)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①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므로 계약이 불가함** • 만14세 이상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견본주택 비치 및 www.현동남양휴튼.com(사이버모델하우스) 게시
○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⑥ 재직증명서	본인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⑦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5)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9.15)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모든 유형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①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므로 계약이 불가함** ※ 견본주택 비치 및 www.현동남양휴튼.com(사이버모델하우스) 게시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⑥ 재직증명서	본인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5)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상세)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예비배우자)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6>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원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전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전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현장수납 불가)** * 주택공급금액 10% +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④ 본인(계약자) 도장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자산기준 초과, 부적격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자도 포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금액 및 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향상 및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경남개발공사 분양관리팀(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주 방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 야간 센서등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센서등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최초 현장계약체결기간 [2021.11.8(월) ~ 2021.11.10.(수)]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현동지구 여건**
- 본 지구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측으로 현동초등학교, 구산중학교가 있으며 북측 인근에 2번국도와 5번국도가 연결되는 현동교차로가 위치하며, 동측 3KM 지점에 창원시 등으로 연결되는 마창대교가 위치함**
- 단지 북서측으로 어린이공원 및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남서측으로는 국도가 인접해 있어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상가 및 기타용지 등의 생활편익시설물 건립 일정이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각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부는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입로 인접동은 차량 진·출입시 회전등 및 경고음이 울림
- 어린이 놀이터와 인접한 동은 어린이 놀이터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폭, 선형, 진·출입 관련 사항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는 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될 경우 방음벽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 단지 내 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평면,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등에 따라 재질이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동에 설치되는 승강기 **및 외부승강기의** 운영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점검구로 설치됨
- 본 단지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최초 입주시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가 설치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주기 도래 시 일반계량기로 교체하며, 입주자가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지상에는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지하 주차장은 **12개동 1,450대(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 6대 미포함), 지하 1~2층**으로 설계되어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및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되고 그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에 내부시설물(비품류등)은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사용자 및 옥상 관리, 태양광패널 관리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59B 최상층 타입(208동 제외)에 한해 서비스공간으로 제공되는 다락은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외기온도(습도)차이에 의해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 수건장 뒷면은 미장마감이며, 주방 씽크대 상,하부장 뒷면은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본 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20대(급속 2대, 완속 18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 동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외 쓰레기수거함이 **14개소(근린생활시설용 2개소 포함)** 설치될 예정이며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도 있음
- 아파트 일부동 옥탑층에는 TV시청을 위한 공청 및 위성안테나 시설물이 설치됨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단지내 보안·가로등, 주변도로 가로등·공원등 불빛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산림재해 및 산불예방을 위한 무선감시카메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은 설계도면 상 지정위치(**201 ~ 212동, 지하1층**)에 설치되며, 현장 여건상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산책로 등이 인접해 있는 저층세대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CCTV는 단지 내 주·부출입구, 옥외놀이터, 지하주차장, 각동 출입구(실내), 각 동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됨
- **본 단지는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건축법상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테라스를 일부세대에 제공하고 있으며, 테라스는 각층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대지 지분, 전용, 공용면적등과 상관없이 일부세대에서 전용하여 사용되는 공간이나,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며, 계약 전 이에 대해 관련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1층 테라스 사용에 의해, 인근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1층 테라스는 안전을 위해 테라스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며, 비정상적 사용으로 인한 입주민 상호간의 분쟁은 당사와 무관함.**
- **1층 테라스 세대의 테라스 유지관리는 입주자가 하여야 하며 당사와 무관함.**
- **1층 전용 테라스는 201동 104호, 202동 101호, 102호, 103호, 211동 104호에 구조 및 입주자 동선 문제로 설치되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은 201동 1층과 209동~212동 사이 별동으로 설치되므로 인접 세대는 소음 및 냄새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음**
- 청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팜플렛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사업승인도서 및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견본주택(실물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의 위치, 단지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표시, BI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자의 요구로 인하여 단지 계획 및 세대 계획 변경은 불가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시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청약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 전 세대 발코니 확장세대이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발코니 창호로 이중분할창이 설치되므로 난간대는 추가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안방발코니 대피 창호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2층 ~ 최상층 안방 발코니에는 소방법규에 의거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며, 피난 사다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상부에 천장 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난방 분배기는 세대 씽크 하부장에 설치됨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1개소, 안방 벽걸이 기준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에어콘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안방에 매립 설치됨
-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대분전함 및 통합세대단자함은 주방벽체에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렌지후드는 **직배기용으로** 설치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중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함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거실 및 안방에 매립되는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액자형 포함)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안방의 에어컨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 기준으로 설치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형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발코니 실외기실에 별도로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는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됨
- 세대 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됨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욕조 바닥은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또는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내외에 설치될 수 있으며, 크기는 층별로 다를 수 있음
- 주방가구 후드장 상부는 수납이 제한적임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세대내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월패드, 주방 TV폰의 색상 및 모양·위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내 전원공급용 콘센트 및 제어신호용 점검구 박스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평형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목문틀 시공상 발새하는 타카 구멍자국은 자재부착 및 고정용으로 하자가 아님

■ **부대복리시설**
- 게스트하우스(3실), 경로당, 어린이집, 맘스카페, 다함께돌봄교실, 에듀컬쳐센터, 스카이커뮤니티,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헬스케어센터**, 관리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주차장1,456대(지하1,450,지상6대)**,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3개)**
- 상기 부대시설은 사업계획 승인시 포함된 시설이며,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팜플릿, 주택모형,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분양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과 견본주택,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각종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작과정에서 오류 . 오기 .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불법 구조 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용검사승인 전 현장출입은 불가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가능 함
-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은 반드시 현장 등 확인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 . 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 성능 .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단지 모형, 단위세대 모형), 홈페이지 V.R, 사이버 모델하우스, 팜플렛, 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의 각종 홍보물과 이에 이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임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소음	★★★
구조 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 관련 등급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톱 조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환경 관련 등급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7. 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법」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 예비인증 이후 준공 후에 본 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창원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
2. 신 청 자: 경남개발공사
3.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창원현동 공공택지지구 내 A2BL)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 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범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시설 장치	★
7. 신 · 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지한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해당없음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신인 저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시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 · 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과 근접성	해당없음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처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 · 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8월 27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210mm×297mm[백상지 12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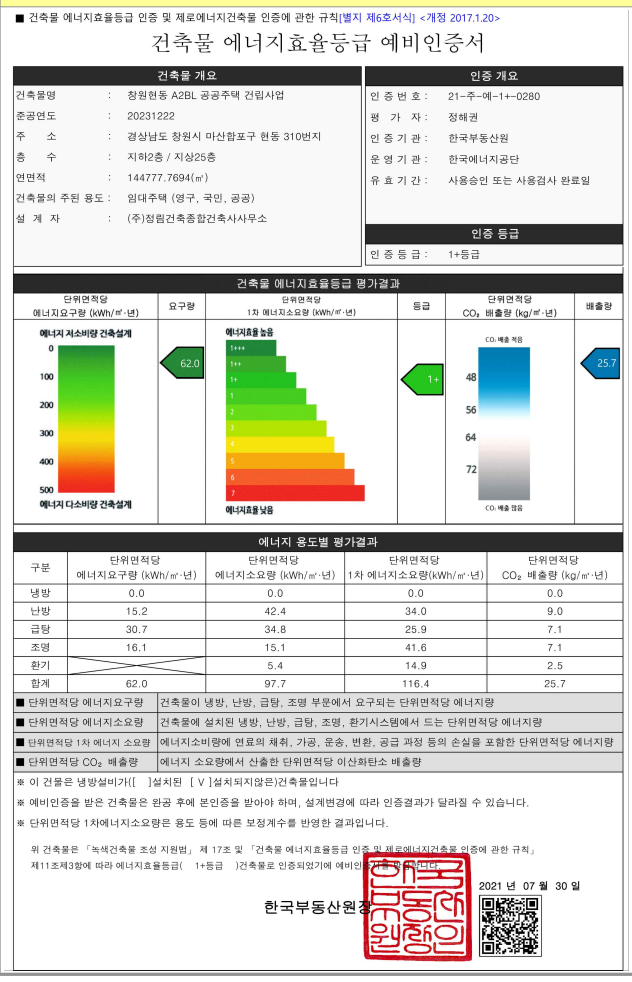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창원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
준공연도	:	20231222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층 수	:	지하2층 / 지상25층
연면적	:	144777.7694(㎡)
건축물의 주된 용도	:	임대주택 (영구, 국민, 공공)
설 계 자	: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 증 번 호 :	21-주-예-1+-0280
평 가 자 :	정해권
인 증 기 관 :	한국부동산원
운 영 기 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 효 기 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 등급
인 증 등 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0 100 200 300 400 500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62.0	에너지효율 높음 1+++ 1++ 1+ 1 2 3 4 5 6 7 에너지효율 낮음	1+	CO2 배출 적음 48 56 64 72 CO2 배출 많음	25.7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15.2	42.4	34.0	9.0
급탕	30.7	34.8	25.9	7.1
조명	16.1	15.1	41.6	7.1
환기		5.4	14.9	2.5
합계	62.0	97.7	116.4	25.7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 년 07 월 30 일

한국부동산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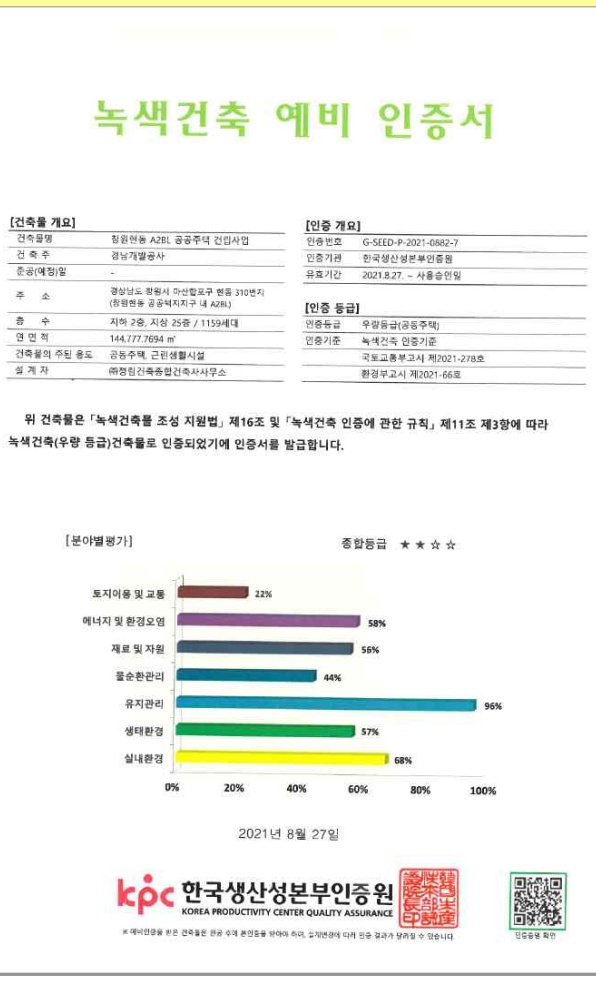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창원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
건 축 주	경남개발공사
준공(예정)일	-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창원현동 공공택지지구 내 A2BL)
층 수	지하 2층, 지상 25층 / 1159세대
연 면 적	144,777.7694 ㎡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설 계 자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1-0882-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1.8.27. ~ 사용승인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우량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21-66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2021년 8월 27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1,004,160
			기간이자	69,515
			필요적 경비	271,363
			그 밖의 비용	1,000,312
			계	12,345,350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192,650
			흙막이공사	1,150,644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579,643
			석축공사	-
			우·오수공사	330,706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42,584
			도로포장공사	54,406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1,817,510
			부대시설공사	202,884
			계	4,371,027
		건축	공통가설공사	1,269,298
			가시설물공사	1,444,980
			지정 및 기초공사	-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12,307,708
			용접공사	-
			조적공사	747,699
			미장공사	721,510
			단열공사	576,842
			방수·방습공사	778,342
			목공사	2,021,793
			가구공사	1,838,134
			금속공사	935,673
			지붕 및 홈통공사	402,773
			창호공사	3,473,614
			유리공사	1,458,269
			타일공사	955,610
			돌공사	1,857,817
			도장공사	754,566
			도배공사	622,253
			수장공사	464,514
			주방용구공사	-
			그 밖의 건축공사	2,129,620
			계	34,761,015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545,681
			급탕설비공사	197,239
			오배수설비공사	1,002,210
			위생기구설비공사	887,534
			난방설비공사	731,729
			가스설비공사	293,349
			자동제어설비공사	315,292
			특수설비공사	631,352
			공조설비공사	88,520
			계	4,692,906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2,192,768
			정보통신공사	1,400,527
			소방설비공사	2,773,040
			승강기공사	1,373,550
			계	7,739,885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1,844,612
			이윤	1,037,093

			계	2,881,705
	간접비		설계비	1,775,700
			감리비	-
			일반분양시설 경비	243,770
			분담금 및 부담금	226,989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923,272
			계	3,169,732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3,273,197
합계				73,234,817

9.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주택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가산비					
	계	기간이자	흙막이 공사비	기타 비용	계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주택성능에 따른 가산비	친환경 건축물 인증가산비
						홈네트워크	에어컨 냉매배관	기계환기 설비		
금액	1,500,493	77,742	968,416	454,335	3,660,601	228,317	223,863	465,906	2,049,734	692,781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경남개발공사 (609-82-06582)	남양건설㈜ (412-81-02461) ㈜대저건설 (622-81-01389) 서진산업㈜ (609-81-43877) 오경종합건설 (603-01-54748) 제일건설㈜ (124-86-09636) ㈜일렉콤 (608-81-13706) 덕신건업㈜ (613-81-04102)	공사이행보증서 대체	건축/전기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통신/소방	주식회사 선한이엔지

11. 경남개발공사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방문 문의(경남개발공사 견본주택)

■ **견본주택 안내**

-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
- 운영기간 : 2021.9.15. ~ 분양종료 시 까지
- 운영시간 : 10:00~17:00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견본주택 : 055-223-8600

■ **분양홈페이지**

- 주　　소 : www.현동남양휴튼.com

2021. 9. 15

경남개발공사